광운창업보육센터 운영 규정

제정일: 2011. 8. 24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(이하 '본교') 학칙 제97조 제3항제1호에 의거하여 설치된 광운창 업보육센터(이하 '센터'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운영목적) 센터는 예비창업자와 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활동에 필요한 장소와 설비를 제공하고 기술 및 경영 지원을 함으로써 초기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업무) 센터는 제2조의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입주기업 및 입주자에 대한 운영 지원
 - 2. 기술의 공동연구·개발 및 지도·자문
 - 3. 자금의 지원·알선
 - 4. 경영·회계·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
 - 5.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
 - 6.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

제 2 장 조 직

- 제4조(센터장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,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센터장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 -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제5조(직원) ① 센터는 업무의 필요에 의하여 전문매니저와 직원 및 행정보조원을 둘 수 있다.
 - ② 전문매니저는 센터내의 창업보육을 전담하는 전담인력으로, 입주자의 자금유치, 판로 확보, 기술 개발 등 각종 사업활동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 한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- 제6조(구성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 -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운영위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8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운영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 - ④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센터의 사업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
- 2. 입주자 선정, 졸업, 퇴거 등에 관한 사항
- 3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4. 센터의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5. 센터 운영에 관한 감사 및 기타 중요사항

제8조(소집 및 의결)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9조(수입) 센터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충당한다.

- 1. 본교의 운영지원금
- 2. 정부 및 각종 단체 지원금
- 3. 임대료 및 관리비
- 4. 성공부담금
- 5. 기타 찬조금 및 보조금

제10조(회계)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고,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은 본교의 일반적 인 예·결산 절차를 준용한다.

제 5 장 보 칙

제11조(비밀유지) 센터 관계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입주자의 기술 및 영업 비밀 등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의 이익에 반하여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2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